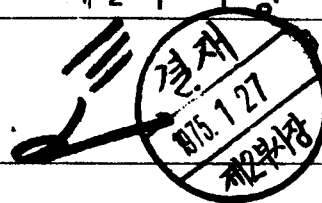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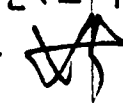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 제415- <i>40</i>	(전화번호 365 )	전 결 규 정 1 조 2 항 부 시장 결 사 함
처리기간	제 2 부 시장		
시행일자			
보존년한	고시제 20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합	업무담당관(고시안심사)
	도시계획과장		시민과장 
	재개발계장		문서관리계장
기안책임자	김학재	75. 1. 25.	조 종합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
경유 수신 참조	각안참조	발신	시장 통계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및 지적승인고시		
제1안	내부결재		
	1. 건설부고시 제368호 (73.9.6)로 재개발구역및 특정		
	가구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바 있는 도림지구내 신축중인 시민회관		
	과 기존 광화문 전화국건물 사이에 지역주민들의 통행과 소방통로		
	및 시민회관 건립공사의 안전관리등의 시급성을 감안 도시계획도로		
	를 신설하여 줄것을 시민회관장 (시회 430-211 74.12.10)으로		
	부터 요청이 있는바		
	2. 동내용을 당시 제1차 (75.1.21)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하였던바 원안대로 심의통과 되었기 도시계획법 제2조 및 동법 제		
	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73.4.4)로 서울특별시시장에게		
	권한위임된사항 이므로 다음도시와같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신설)		
	고시코져 합니다.		
첨부	1. 현황도및 지적도 각7부		
	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아마 회의를관부.		

정서  
관인  
발송

제2안 고시안

서울특별시고시 제 호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

의사한상사 1975. 7. 15  
신사  
전결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적승인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 (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75. 7.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

등급	류별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소토	3류	6m	115m	세종로87-4	도림동 104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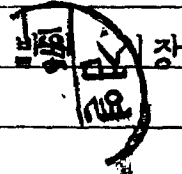
별첨도면표시와 같음. (도면생략)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청도시계획과 및 종로구청시민봉사실 제3안에 ~~별첨함~~ 비치하며 이의한계인자가 표이게 한다.

수신 건설부장관

참조 주택도시국장

제목 등 건



1.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과 건설부고시 제123호 (73.4.4)의 권한위임 사항에 따라 별첨고시문 사본 및 도면과 같이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1. 고시문 사본 및 도면각부

제4안

수신 총무처장관(서울시:문화공보실장)

발신 시장(과장)

제목 관(시)보 게재외퇴

1. 다음 과 같이 관(시)보에 게재외퇴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구분: 고시



나. 관(시)보 게재건명: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및  
지적승인

다.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12조및 동법제13조

첨부 1. 고시문 사본 2부(1부)

제5안

수신 종로구청장

발신 시장

제목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및 지적승인

1. 귀구관내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및 지적승인을 별첨  
고시문 사본및 도면과 같이 결정고시 하였으니 관계도서를 정리  
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하고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수행에 착오없도록합것.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면 1부. 끝.

제6안

수신 시민회관장

발신 시장

제목 동 건

1. 시회 430-211 (74.12.10) 호및 430-242 (74.12.30) 호  
와 관련임.

2. 귀관에서 의뢰한 도림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신설요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결정(신설) 고시 하였기 통보하니 업무수행에  
만전을 기합것.

첨부 1. 고시문 사본 1부

2. 도면 1부. 끝.

675.

75. 1. 21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회의)



서울특별시도시계획위원회

# 제1차회의 요약

안건 1 : 도시계획도로 (대 2-28호) 일부변경

원안 가결 통과

안건 2 : 도시계획광장 (반려동광장) 일부변경 (추가)

원안가결 통과

안건 3 :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결정

원안 가결 통과

안건 4 : 도시계획시설 (소로) 일부변경

원안 가결 통과

안건 5 :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

원안 가결 통과

안건 6 : 서울 도시계획 공원폐지

원안 가결 통과

안건 7 : 도시계획 공원 및 풍치지구 일부변경

원안 가결 통과

안건 8 :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

원안가결 통과

안건 9 : 학교용지 시설결정

가 여의도 여자중고등학교

원안가결 통과

나 한양대학교

다음 회의에서 심의 검토 처리키로가결

안건 10 : 시장용지 시설결정

가 여의도동 1-892

원안가결 통과

나 무여가시장 양성화

총 2개 중 2개 안건은 보류키로하고

원안 가결 통과

안건 11 : 도시계획도로 (개개밭지구내) 건설

원안 가결 통과

# 회의록

1. 일시 : 75. 1. 21 / 16:30

2. 장소 : 도시계획파장실

3. 안건 : / 도시계획도로 (대2-29) 일부변경

2 도시계획광장 일부변경 (추가)

3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결정

4 도시계획시설 (소로) 일부변경

5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

6 도시계획공천해제 (폐지)

7 도시계획공천 및 풍치지구 일부변경

8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

9 학교용지 시설결정

10 시장용지 시설결정

11 도시계획도로 (재개발사업지구내) 신설

4 참석위원

부위원장 손정록 위원회 // 명

5. 기타 참석자

권사 (도시계획과장) 서기 (종합계획과장)

이가로제장 김 재개발과장 지덕제장 (대)

상정파 상정제장 주희개발 2과장

6. 기 록

이 응 섭



## 회 의 내 용

※ 위원장 불참으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

이가로계장 : 74년도 18차 회의 결파보고 낭독 (생략)

위원일동 : 동의

안건 / : 도시계획도로 (대2-28) 일부변경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건설부에 올라가든가

찬 사 : 이미 지적 고시가 났기때문에 건설부에  
올라 갑니다

부위원장 : 기존에서 변경코자하는 선파의 차이는

이가로계장: 약 40% 폭원 차이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새로이 변경될경우 거육이 12등 절리게

되는 거요

부위원장 : 현장을 가보나 암반 현상대로는 사용이 불가  
 능한 지역이 드문지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안건 2 : 도시계획 광장 일부변경 (추가)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내상기위원 : 그렇게 할 경우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을것 같다

부위원장 : 우선 치정해 놓고 시공상의 문제 및 교통계획은  
 나중에 검토해 하자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안건 3 : 도시계획시설 (시외버스주차장) 결정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위원 일동 : 제안동의

안건 4 : 도시계획 시설 (소로) 일부변경

이로계장 : 제안 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폐지할 경우 도로연결 등 지장이 없는지

이로계장 : 현황도 설명 (생략)

위원일동 : 제안 동의

### 안건 5 : 도시계획고도지구 일부변경

지석계장 (대) : 제안 설명 (생략)

관 사 : 보충 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현재 있는 서울빌딩에 대하여는

관 사 : 그대로입니다

위원일동 : 제안 동의

### 안건 6 : 도시계획공원 해제 (폐지)

지석계장 (대) : 제안 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평수는

관 사 : 6,300 평입니다

나상기위원 : 그정도면 근린공원 가능인데

간 사 : 보충설명 (생략)

위원 율 등 : 제안동의

안건 7 : 도시계획공원 및 등치지구 일부변경

지역계획계장(대) : 제안설명 (생략)

주력계량 2파장 : 보충설명 (생략)

주종원 위원 : 나머지 공원응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요

지역계장(대) : 그렇습니다

위원 율 등 : 제안 동의

안건 8 : 도시계획 구역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

지역계장(대) : 제안설명 (생략)

간 사 : 보충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개입소쿠량이 많은줄 아는데

간 사 : 지주의 동의를 득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형갑위원 : 기존주력이 많은지역 같은데

간 사 : 기존주력은 의도록 제외했죠.

이철훈위원 : 본인이 원기로는 시당국에서 벌써 2-3년전  
발도해 놓은 몇몇 토지구획정리지역에도 아직까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유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이렇게 새로운곳을 또 구획  
정리한다고 하는것은 모순이 아니라 이런것  
은 당국에서 시정해 나가야 될것이다

이우현위원 : 도면을보니 천호 구획정리사업지구와 본 신청지  
와 서로 연결이 안되어 있는데 본인생각  
같이서는 가운데 원산지구도 차제에 포함  
시켜서 연결시켰으면 한다

간 사 : 제외한 이구는 기존 주택들이 들어선 지역  
이어서요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 안건 9 : 학교응지 시설결정

가 여위도 여자중고등학교

지역계장(대) : 제안 설명 (생략)

이원관위원 : 언제는 해달라고 해서 해주셨더니 그것을 또  
풀어달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군요.

지역계장(대) : 당초보다 편지부처 협의에 의해 어쩔수  
없이 변경을 줄이게 된것입니다.

위원 박동 : 계안동의  
나 한양대학교

지역계장(대) 제안 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신청지는 전부가 학교소유인가

지역계장(대) : 그렇습니다

서영갑위원 : 좀더 상세한 설명을 들었으면 한다 본인이  
알기로는 도면을보니 문제점들이 많을것 같다

나상기위원 : 학교측이나 아니면 좀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한다

관 사 : 그림 본건에 대하여는 실무진에서 현황등  
좀더 검토 확인한후 다음 회의에서

심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간 사 : 그림 본건은 다음 회의에서 제삼의 기로  
되었습니다

안건 10 : 시장응지 시설 결정

가) 여의도동 1-892

간 사 : 제안설명 (생략)

주중원위원 : 건물미판 관계등에 대하여는

간 사 : 별도 미판지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개최소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나) 무척가시장양성화 (총 28개소)

간 사 : 제안설명 (생략)

무척가 시장양성화에 따른 관계관 회의 및

처리방침에 대한 현황설명 (생략)

이원환위원 : 총 28개소를 하나 하나 심의 한다는 것은

시간관계도 있고하니 그간 실무자 및 관계부  
 회의와 사전 협의 그리고 이미 양행과  
 방첩에 대한 지침을 세웠더니 그중 도시계획  
 법이나 시장법에 의해 검토한 결과 문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건만 심의키로하자  
 간 사 : 2개소중 2개소는 현재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있어서 사업완토시에 다루기로 했습니다

상정파장(예):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 및 현황설명  
 (생략)

주중권위원 : 학교와는 300㎡ 시장과는 500㎡ 에 저축은  
 없습니다

상정파장(예): 저축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계부처와 협의  
 하여 처리코자 합니다

주중권위원 : 별도 협의후 저축있는것에 대하여는 현실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간 사 : 그렇습니다

김준식위원 : 2개안건의 보충은 어디 어디입니까

간 사 : 2/ 번째 시흥연쇄상가와 22 번째 시흥협동상  
가죠

이천원위원 : 시흥의 공익성에 앞서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현상은 없어야 될 줄 안다 참고로 시당  
국에서 처리지침에 나라안바와 같이 안고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엄격한 규제와 확연  
감독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간 사 : 법정시설을 갖추도록 조건부 지시에 의해 완전  
시설을 갖춘 후에야 허가가 되는거죠

상정파장(대) : 보충설명 (생략)

부위원장 : 법정시설이란

상정파장(대) : 소방도로, 주차장 등 기준시설이죠

김종삼상임위원 : 현재로서는 시설개수명령을 할수있는거죠

그러므로 우선 현실화시켜 법제시설을 명명  
하루 조건부로 허가 하여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 우리로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심의  
활반이고 행정명령에 대하여는 해당부서  
에서 담당해야 하나까 별 문제점이 없다면  
현실화시켜줄의 가치가 있나

이위원 : 시장 심의 기준으로보면 시장과의 거리가  
500m 학교와는 300m로 되어 있는데 그범을  
무시할수는 없지 않나

간 사 : 그 기준이란 당시가 심의기준을 만들어  
놓은것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같은것은  
없습니다

나상기위원 : 현실화시키자는 당국의 방침에 대하여는  
이해가 가나 우선 현실화시켜줄성우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주차시설 같은 것일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강력한 조치가  
취해 서야 할 것이다.

상정 파장 (여) : 현실화 시켜준과 동시 법정시설을 갖출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하여 명령이 이행된 후에  
허가 해주려는 것입니다.

위원 김동 : 제안 동의

안건 // : 도시계획도로 (재개발지구내) 신설

김재발계장 : 제안 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현재도 사람이 다닐수있는 소로가 있는데

간 사 : 새로히 저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국에서

보상을 주어 우선 도로를 확보하려는 것이죠

주중원위원 : 전체적인 종합 재개발계획과 관련 검토되어

야 할게 아니냐

전체 종합기본계획에는 반영이 있었지!

간 사: 전체 종합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현 시설편  
 관 선입에 따른 사업시행의 우선으로 불가  
 피한 것이지요

강민주위원 현시설편관선입부지와 전획구사이 아니냐

간 사: 그렇습니다

위원 원동: 제안등의

부위원장: 이상으로 75년도 제1차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폐 회 -

75. 1. 2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

(제1차회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657

## 차 례

-	도시계획위원회의 제18차(74.12.23) 회의록	3
二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안	23
1	도시계획도로(대2-28) 일부변경	25
2	도시계획광장일부변경(추가)	29
3	도시계획시설(노외버스주차장)결정	33
4	도시계획시설(소로)일부변경	37
5	도시계획고도지구일부변경	41
6	도시계획공원(재개발지)	45
7	도시계획공원및 중치지구 일부변경	49
8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시설결정	53
9	학교 시설결정	57
10	시장 시설결정	61
11	도시계획도로(재개발지구내) 시설	67

# — 도시계획위원회호제18차회의록

(74. 12. 23.)

一. 도시계획위원회 제18차 (74.12.23) 회의록

(제18차 회의 요약)

안건 1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 변경

가 판악구 신대방동 522-2 차내 소로폐지

원안가결통과

안건 2 :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주차장) 결정

가 성수동2가 234-1 외 1 필지

원안가결통과

나 신철동 256-5

원안가결통과

안건 3 : 도시계획시설 (학교용지) 결정

가 국민대학

원안가결통과

나 봉천학원

원안가결통과



안건 4: 도시계획시설 (시장용지) 변경

가 영등포구 개봉동 324-1 (개봉시장)

천안가결통과

안건 5: 도시계획 공천 일부변경

가 능동아동공원

천안가결통과

안건 6: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가 영등포구 가리봉동, 옥산동, 개봉동 일부  
지역

천안가결통과

나 중구 창릉동 2가 192 일부지역

천안가결통과

안건 7: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

천안가결통과

안건 8: 예평로2가 재개발 및 투정가구 정비지구

제 1, 2 지구에 일부변경

천안가결 통과

안건 9 : 도동 재개발지구 택지

천안가결 통과

안건 10 : 제3 수출산업 공업단지 구역 및 지구내 시설  
변경

천안가결 통과 이나 공업단지 중심부내의  
접단부락부분은 제외

## 회의록

- 1 일시 : 74. 12. 23. 14:00
- 2 장소 : 도시계획과장실
- 3 안건 : 1 도시계획 도로 일부 변경
  - 2 도시계획시설 ( 시내버스주차장 ) 결정
  - 3 " ( 학교응지 ) 결정
  - 4 " ( 시장응지 ) 결정
  - 5 도시계획 공원 일부 변경
  - 6 응도지역 일부 변경
  - 7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
  - 8 재개발사업지구계 변경
  - 9 재개발사업지구 배치
  - 10 수불산입 공업단지 구역 및 시설 변경

4 참석위원 :

부위원장 손정복위원 외 8명

5 기타참여자

서기 권기덕계장 이가로계장 김세계장 박계장

6 기록

이응섭

## 회의내용

\*위원장 불참으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

부위원장 : 지난 회의결과 보고를 하시오

이가로계장 : 제1차 회의결과 보고 (생략)

부위원장 : 이의 없으면 본회를 개최하시오

위원장 등 : 동의

안건 1 : 도시계획시설 (도로) 일부 변경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내상기위원 : 폐지하는 것이군요

부위원장 : 폐지에 따른 도로 연결등 인근지장여부는  
없는지

이가로계장 : 인근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된다면  
이 지역이 현재는 공장이 들어섰지만 현재  
는 공장이 없어 될 경우 이지역이 주거  
지역이나 현재계획도로 부력으로 볼때 폐지  
될경우 대안책 부력이 된다는 점입니다

부위원장 : 그렇게 될 경우 일단의 주택단지 같은

단지 계획이 있어야 될데이니까 도로계획은

문제 될것이 없다.

김중성 상임위원 : 주거지역 내 공장이 들어선것이 공업화  
구역

이 가로계장 ; 길에 나란 것이지요

나상기위원 : 공장이 이전될 경우를 감안해서 아예  
단지 계획과 관련해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철환위원 : 전반적인 도로망계획으로 봐서는 되는데  
계 타당하군요.

나상기위원 : 폐기되는 도로계획면적은

이 가로계장 : 약 5~600평 정도 됩니다.

주중원위원 : 도로계획면적 기능을 보니 학교가 겹쳐  
있어 그 기능상으로 봐서는 별지장이  
없지군요.

나상거위원 : 공장이 현재있는 지역이나 양분간

공장이전은 없겠군요

이가로계장 : 계획된 도로이지 사실 개설된 도로는 아

니며 그 실호가 희박하죠 현재 공장

건물도 저추되고 있으므로

부위원장 : 탄의의 없으면 제안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일동 : 제안동의

안건 2 : 도시계획시설 (시내버스주차장) 결정

이가로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위원님들께서는 탄의의 없으시죠

위원일동 : 제안 동의

안건 3 : 도시계획시설 (학교응지) 결정

가 국민대학

원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주증권위원 : 현재있는 학교를 시설결정해달라는 요청이  
군요

권지역계장 : 그렇습니다.

위원 일 등 : 제안등의

나. 봉천학원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신청지내 건물이 있습니까

권지역계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 주변에 건물이 있는지

권지역계장 : 있습니다. (도면설명)

부위원장 : 지목이 현재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권지역계장 : 현재건물이 들어서있는 약 400평 정도는  
대지로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운동장으로  
쓰고있는 임야입니다.

부위원장 : 나무는 있는지



권지역계장 : 없습니다.

부위원장 : 5,800 평 정도면 괜찮은지

김종성상임위원 : 국회주택단지가 조성된 별부분으로서 나무  
는 없는 지역입니다.

주증천위원 : 학교소유지 입니다.

권지역계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 문제점이 없군요.

위원들 등 : 제안동의.

안건 4 : 도시계획시설 (시장용지) 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300평은 너무하고 한 500평 정도는 되어  
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슈-퍼마켓 정도는 되어야 하니까.

권지역계장 : 당초 약 1,400 평 정도였습니다. 만 당해

구청에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500 평으로  
줄여 요청한 것입니다.

주심원위원 : 인접과의 관계는

권지역계장 : 도면설명 (성략)

강민주위원 : 로복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도로변  
이라면 곤란하지 않나

권지역계장 : 8m 이하까 별지장은 없는데 압니다.

부위원장 : 도로변으로 한 200 평 정도는 주차장 등 공  
지로 확보하고 그 뒤에다 짓게 하는게 바  
람직하지 않을까요.

나상기위원 : 현재 지역여건등으로 볼때 300 평 정도이  
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평수를 줄여려하  
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같다.

위원 일동 : 제안동의

안건 5 : 도시계획공원 일부변경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공원주변 소로계획중 일부구간 (도면지적  
부분)은 직각으로 클곡이 되어 차량통행  
등·지장을 초래하니 선형조정이 되어야  
겠다.

권지역계장 : 주택이 들어서있는 지역이라 선형조정이  
곤란한 지역이죠

주종권위원 : 도시계획측면에서 볼때 선형조정을 해야될  
것이 아닌가요.

부위원장 : 집이 있는 쪽으로 말고 공원용지쪽으로  
라도 조정해서 선형을 조정하십시오.

권지역계장 : 선형조정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처리 하겠  
읍니다.

위원일동 : 제안동의

## 안건 6 :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

### 가. 전용공장지역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보충설명 (현황사진 및 도면)

나상기위원 : 주로 현재들어차 있는 공장 규모는

부위원장 : 조그만 소규모 공장들이 있지만 장래 큰  
공장들이 들어설 경우를 생각해서 지요

이성욱위원 : 전용공업지역이 여기 말고도 또 있습니까

부위원장 : 서울에서는 처음 지정하려는 것이지요

위원 일동 : 제안 동의

### 나. 장충동2가 상업지역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보충설명 ( )

나상기위원 : 도로제설이 불가외한 지역이군요

이성욱위원 : 도로제설선에 저촉되는 부지는 서울시가

직접 기부채납 받는거라니 잘한 일이다.

부위원장 : 기부채납 공증인 착서까지 받아 놓았다.

위원장님 : 제안동의

안건 7 :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시설결정

권지역계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보충설명 (생략)

나상기위원 : 뒷부분 제외하는 왜 제외했나요

김종성상임위원 : 기대지화 되어왔는 지역으로서 현재 건물  
이 많이 들어서있는 지역이죠

나상기위원 : 서울시가 직접하겠더니 어의가 없군요

부위원장 : 제안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 제안동의

## 안건 8. 태평로 2가 재개발 및 특정지구

### 정비지구 제1.2지구 일부변경

김재개발위원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지구제만 조정해달라는 것인지

김재개발위원장 :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 원안 가결입니다.

위원 일동 : 제안동의

## 안건 9. 도동재개발지구 해제

김재개발위원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보충설명 ( " )

나상기위원 : 현교통 센라워 풍지는

부위원장 : 매우설립에서 자기네들이 건물을 짓  
겠다고 합니다.

나상기위원 : 현재 있는 교통센터도 평가사유서는

검재개발제장 : 현실화시켜 주려는 것이지요

위원 일동 : 제안동의

### 안건 10. 제3수출산업공업단지구역 및

#### 지구내 시설변경

이종합제장 : 제안설명 (생략)

부위원장 : 목적설명 ( " )

이성욱위원 : 용도는 같더라도 다만 공업단지 구역  
에서 제외하려는 것이군요

부위원장 : 그렇습니다. 단지에서만 제외해 달라는  
것이지요. 그렇더라도 공업선용지역  
이 되니까 공장이외에는 절대 불가  
하죠

그리고 전용공업지역이 되더라도 권주력  
에는 하등의 피해가 없죠

그리고 요청지중 공업단지 중심부내의  
집단부락 부락에 대하여는 (도면 표시  
부락)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제외시켰으면 합니다

위원 일동 : 부위원장 제안에 동의

부위원장 : 이상으로 제 18차 본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 회

회 —



# 부 록

## 제 1 차(75.1.21)도시계획위원회

### 부 의 안 건

1	도시계획도로 대로 2-28호선 일부변경	25
2	도시계획광장(안라동광장) 일부변경(추가)	29
3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결정	33
4	도시계획시설(소로) 일부변경	37
5	도시계획고도지구 일부변경	41
6	도시계획공원해제(폐지)	45
7	도시계획공원 및 등치지구 일부변경	49
8	도시계획 구획정리사업지구 시설결정	53
9	학교용지 시설결정	57
10	시장용지 시설결정	61
11	도시계획소로(재개발지구내) 신설	67



결의 번호	
결의년월일	1975. 1. 21
	제 18 회

결의사항

도시계획도로 대로 2-28 호선 일부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1975. 1. 21

1. 도시계획도로 대로 2-28 호선 일부변경

< 의결주문 >

대로 2류 28 호선 일부변경 (위치변경) 에 대한 부  
의안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노선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대로	2	28	m 30	m 8.5710	정당동 광로/4	신초동 광로/9	
변경	"	2	28	"	"	"	"	위치일부변경

나. 변경사유

1) 변경표지하는 도시계획도로는 대부분이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로 구획정리사업방법에 의해 일부  
개설되었거나 용지가 확보되었으나 사업지구내  
임야지로 제척되어 있어 사업지구내 도로와 연  
결케 결장하였던 것이며

- (2) 동로로가 경부고속도로 인입선인 대로 / 류21호 선과 교차구간이 27m 이상의 심한 지반고차로 인하여 공사비 과다로 선형을 일부조정하고 본선형 조정에 따른 연결 부분인 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내도 동시에 취치 변경코지함



결 의 번 호		결 의 사 항
결 의 년 월 일	1975. 1. 21	
	제 18 회	

도시계획광장(만리동광장) 일부변경 (추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 출 년 월 일	1975. 1. 21

## 2. 도시계획광장 (만리동광장) 일부변경 (추가)

<의결주문>

도시계획시설 만리동광장일부변경 (추가) 에 대한 부  
의 안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시설조서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만리동광장	서대문구 만리동	19,572 <sup>㎡</sup>	
변경	"	"	24,150	일부추가

나, 변경(추가) 사유

74년도 개통된바 있는 대2-19호선 (만리동 - 공  
덕동간) 에 연결되는 서울역고가교 연장공사에 따  
라 선형상 일부를 추가코자함.



결의 번호		결의 내역
결의 연월일	1975. 1.	
	세      월	

도시계획시설(노외주차장) 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 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
제출연월일	1975. 1.

### 3.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결정

< 의결주문 >

도시계획시설 노외주차장 시설결정에 대한 부의안건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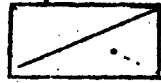
가 시설조사

시설명	위치	면적	비고
노외주차장	우이동 198외1	4482.5 <sup>m<sup>2</sup></sup>	영선교통 및 영신 여객주식회사
	198외2	(1325 평)	

나. 결정사유

현재 사용중인 주차장은 시설마비로 시설개선 명  
령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로 (우이동 - 수유동  
간 25<sup>m</sup>) 용지가 수용되고 잔여지로는 협소하여 시  
설개선과 차량수용이 불가능하여 인접지에 용지 확보하여  
2개사 공동으로 주차장과 부대시설을 하여 시민교통에 공하고적합





결의번호	
결의연월일	25 / . . .
	제 . . . 차

결의사항

도시 계획시설(소로) 일부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위원회 결의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
제출연월일	25 / . . .

#### 4. 도시계획시설(소로) 일부변경

##### < 의결주문 >

도봉구 수유동 432-2 외 2 앞 도시계획소로 일부변경  
(폐지) 에 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가. 노선 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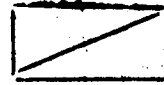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특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기점	소로	3		8 <sup>7</sup>	35 <sup>7</sup>	수유동 440-96	수유동 518-2	
변경	"	3		6 <sup>7</sup>	24 <sup>7</sup>	" 519-44	"	일부구간 폐지

##### 나. 변경사유

- 1) 변경코려 하는 도시계획도로는 1969. 1. 18 자  
서울시 고시 제3호로 결정한바 있으나 증명용  
도면작성시 이식착오로 도시계획선이 일랑응도면

에서 수락되므로 동차상에 건축 허가된 건물이  
3棟 건립케 되었으며,

- (2) 계획상에는 식축이 약 4% 정도로 연속 땅이  
있어 상하간이 완전히 결렬되어 있고 건축 허가  
된 건축물 3棟이 있어 앞으로 개설시 막대한  
보상과 원거 주민의 민원이 있으므로 원형 개  
설된 도로로 그 지역내 통행로로 대체키로 하  
고 본구간 폐지코자함



결의 번호	
결의년월일	1995. 1. 21
	제 18 회

결의사항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1995. 1. 21

# 5. 서울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 변경

## <의결주문>

당시 도시계획 고도지구 일부변경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고도지구 변경조서

단위: ㎡

구분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전	변경	변경후	
고도지구 지정	서울운동장 주변고도지구	성동구 신당동 213외 4필지	19,200	1,600	17,520	최고 고도지구 한계반고(평균 20m) 이상 이하

## 나 현황 및 변경사유

(1) 위치: 성동구 신당동 213 외 4필지

(2) 고도지구 해제면적 1,600 ㎡

(3) 현황: 현재 변전소가 일부 시설되어 있는 곳

으로 현 변전시설 확충으로 인한 요청임



결 의 번 호	
결 의 년 월 일	1975. 1. 21
	제 1 회

결 의 수 령

도 시 제 회 공 원 해 제 ( 폐 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서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 출 년 월 일	1975. 1. 21

## 6. 서울도시계획공원 폐지

### < 의 질 주 문 >

서울도시계획공원 (독동 제2공원) 폐지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 질 한다.

### 가. 공원 폐지 조 치

단위: m<sup>2</sup>

공원분류	공원명	소재지	면적	폐지
근린공원	독동제2공원	영등포구 독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21,000	

### 나. 폐지 사유

- (1) 건설부고시 제 465호(71.8.6)로 신시내 공원으로 계획 결정 고시된 독동 제2공원은 건설부 공고 제6호(68.1.18)로 사업상시 인가 되어
- (2) 서울특별시공고 제 33호(71.2.24)로 환적 예정지 지정된 정인트리 구획 정리 사업지구내 162, 163, 구획 주위에 대하여 기회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수익도록 지정 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취장으로 제 회 되어 있는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 하여 구획정리 사업계획에 차질을 초래코 있는 등 공원 용지를 해폐(폐지) 조치 하는 것임.



결의 번호	
결의 연월일	1975. 1. 21
	제 1 회

결의 사항

도시계획 공원 및 풍치지구 일부 변경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 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
제출 연월일	1975. 1. 21



# ㄱ 도시계획공원 및 등치지구 일부변경

## <의결주문>

당시 도시계획공원 및 등치지구 일부변경에 관한 부의안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가. 공원변경조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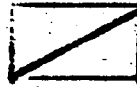
공원종류	공원명	위치	면적			비고
			기립	변경	확정후	
보통공원	응봉공원	응봉, 한남, 금호, 신장동 일부지역	768,125	468,925	299,406	주거지역내 등치지구

### 나. 등치지구 변경조서

지구명	위치	변경면적	비고
금호등치지구	성동구, 금호, 응봉동 일부지역	91,000	주거지역내 등치지구

## 다. 변경 사유

1. 당시 설립 기업인 불광역구 재개발 사업을 시행키 위하여 1975년도 시행부의 금호 제1지구외 10개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내 일부지역이 공원에 지목되어 사업 시행에 차질을 초래코 있어 주거지역 비 불치지구로 변경 요청 하는 것임.
2. 기해 사업실시 인가된 금호 제2구역은 현재 용도 지역상 주거지역이나 정부고속도로 가 시선 내에 있고 지질상 사질 및 연암이고 조정을 감안 주거지역 비 불치지구로 용도 변경키 위하여 요청 한 것임.



결의번호	
결의년월일	1975. 1. 21
	제 1 회

결의사항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지구시설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출처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1975. 1. 21

## 8. 도시계획토지 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 결정

< 의결주 문 >

서울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지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  
한다.

가. 지정 내용

- (1) 위치 : 서울 성동구 천호동, 암사동 각 일  
부 지역
- (2) 면적 : 490,000 평 (1,544,000<sup>m</sup><sup>2</sup>)
- (3) 시행방법 : 토지구획정리 사업
- (4) 사업기간 : 1975 ~ 1977 (3년)

나. 현황 및 지정 사유

1. 성동구 광장동에서 천호동 쪽으로 연결되는  
광진교에 인접하여 암사동 특 강변 도로를  
따라 인근 지역의 유휴지를 개발하여 하강 홍수지

침수로 인한 피해방지를 하고 강변 1로 완성  
및 순환선 도로연장 개설 하여 천호 부도심  
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 하며 상습 침수 지  
역의 토지 이용 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토지구획  
정리지구 사업에 의한 방법으로 발전시키기 위하  
여 지침코자 하는 것임.



결의 번호	
결의년월일	75. 1. 21
	제 . 회

결의안건

학교용지시설결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출자	서울특별시
제출년월일	1975. 1. 21

## 9. 학교용지시설결정

< 의결주문 >

도시계획 학교용지 시설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학교시설결정조서

(1) 학교명 : 여의도 여자 중고등학교

(2) 위치 :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144

(3) 면적 : 6,000평

나. 현행 및 사유

(1) 본교지는 신설학교로서 교육위원회 교육감 요청에 의거 시공재파장이 의뢰요청

(2) 도시계획사항 : 주거지역

(3) 신청사 : 시교육감 요청에 의거 관재파장 의뢰



결의번호	
결의연월일	75. 1. 21
	제 1 회

결의사항

시 장 용 지 시 설 결 정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출연월일	75. 1. 21



# 10. 시장용지 시설결정

## < 의결주문 >

시장용지 시설결정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가. 시장시설결정

#### (1) 신설시장

신 청 지	면 적	지 목	도시계획사 함	신 청 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2 (T)	503평	대	주거지역	삼익기업 주식회사
영등포구 여의도동 1~892 (L)	499평	대	주거지역	삼익기업 주식회사

#### (2) 부허가시장 양성화

번호	구칭별	시 장 명	신 청 인	신 청면적 (평)	비 고
1	종 로	세운상가가동	김 경 호	570 <sup>38</sup>	

번호	구분별	시장명	신청인	신청면적 (평)	비고
2	중 구	남대문 시장	이근택	7,616 <sup>2</sup>	1. 804.2 <sup>2</sup> (옥장관) 5. 812 (기타가)
3	.	동화면 왜상가	김대성	191 <sup>2</sup>	
4	"	디스카운트스토어 (시라노)	정준채	237	
5	.	자유시장	조성기	452 <sup>2</sup>	
6	.	칭계상가	조종학	414 <sup>2</sup>	
7	동대문	응두시장	권필	382 <sup>2</sup>	
8	서대문	통계시장	최기승	905	
9	은평	면지시장	이정남	650	
10	.	면서시장	전의응	490	
11	성동	한양시장	김연관	989	
12	.	성일시장	손한식	360	
13	.	통년상가	이준	648	

14	천포	포로시장	임경운	563	
15	마포	대룡시장	이응식	386	
16	용산	보광시장	박인관	497	
17	·	투암시장	전토갑	240 <sup>1</sup>	
18	·	응문시장	남궁선	357 <sup>2</sup>	
19	도봉	쌍문시장	이은진	1,402 <sup>2</sup>	
20	·	동북시장	박동길	818	
21	영등포	시흥면채상가	최일남	984 <sup>2</sup>	
22	·	시흥림동상가	강의수	1,022	
23	·	대림상가	이도성외8	633	
24	·	영등포상가	박병현	321	
25	·	삼구시장	이정훈	365	
26	·	영등포노래리시장	이형열	437 <sup>6</sup>	200 평 국유지포함
27	·	남서울상가	이호택	894 <sup>2</sup>	
28	·	영신상가	유장훈	662 <sup>6</sup>	

## 나. 사유

- (1) 신설시장은 아파트 ~~각각종은~~ ~~이용~~ ~~하는~~ 주민을 위  
한 시장을 개설코자 하는 것임
- (2) 기존 무리가 시장은 무리가 시장 양성회 방침에 의  
거 현실조정코자 하려는 것임

( 별첨자료 참조 )



결 의 번 호	
결 의 년 월 일	1975. 1. 21
	제 1 회

결 의 사 항

도시계획도로 (재개발지구내) 신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결의안건

제 출 자	서울특별시
제 출 년 월 일	1975. 1. 21

11. 도시계획도로 (재개발지구내) 신설

<의결주문>

도영지구·재개발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내 도시계획도로 신설에 관한 부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가) 도시계획도로 신설 조서

등급	류별	폭권	연장	기 점	종 점	비고
소로	3류	6m	115m	세종로 81~4	도영동 104	

나) 도시계획도로 신설 사유

- 1) 건설부고시 제 367 호 (73.9.6) 로 재개발 및 특정지구 정비지구로 결정고시된 도영지구 내 지역회관장으로 부러 신축중인 지역회관과 기존 광희문 전외국 차이에 도시계획 도로를

신설하여 물건을 요청하여 온바

- 2) 동키치의 도로는 주민들의 통행과 소방 및  
대피통로로서 신설이 불가피할 뿐 아니라, 시군  
회관 신축공사의 안전관리 및 시공편의상 시  
답하다는 시군회관장의 요청임